

간호원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새로운 경향

—간호원의 법적, 사회적 책임

이 선자교수

Legislative and Civil Responsibilities of the Nurse

이 선자교수는 서울의대 간호학과를 나오고 서울 대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72년 미네소타대학교에서 이학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교수이며, 대한간호협회 출판홍보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편집자 주〉

제가 제16차 ICN총회에 참석하여 발표한 분과토의는 「간호의 새로운 수명선을 향한 간호」란 주제 및 제3연제인 「간호원으로서 전문직업적 책임의 새로운 차원」과 관련된 분과토의로서 「간호원에 대한 사회적, 법적(입법적, 민법적) 입장에서의 책임」이란 제목으로, 토의에 참가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토의에 참석하여 발표한 저의 견해를 간단히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간호사업이 신 경지의 무한한 가능성을 추구하려고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차원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즉 간호교육과 실무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효과있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간호가 처해있고 상태하고 있는 사회제도와 규범을 우리 간호원들은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제도와 규범이 어떻게 하여 제정되며, 또한 우리 간호사업과 어떤 연관으로 우리 간호원의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나를 알아야겠습니다.

사회의 제도중에서 가장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 보건의료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보건의료제도가 운영되는 데는 이 제도에 관한 각종 법규가 있는데, 이러한 각종 법률과 법규는 직접 간접으로 간호사업의 모든 활동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법률이란 사회의 질서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억제토록 하는 강제성이 개재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적문직의 보호나 발전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간호원의 확대된 역할을 국민보건의 양상을 위해 공헌하고 싶어도 의료법의 간호업무규정에는 간호원이 단독으로 환자의 견강평가나 간단한 치료조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의사의 지시나 처방에 의해서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적인 제약을 받게되는 경우가 즉 선의를 위한 병사가 법적인 체약문제로 간호의 병사정신을 억제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절차와 관련시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는 간호원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한 시민이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것 같읍니다.

그 이유는 간호의 범위를 우리 자신이 아우르며 주장을 해도 일반시민이나 정치인, 행정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한,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일선보건소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원들로부터 이러한 호소를 누차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야기시키는 근본문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까지 틈만 있으면 곰곰히 생각하곤 했습니다.

우리 간호원들은 간호원이 되기까지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보호를 받으며, 22세 전후가 될 때까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는 주로 병원에 취업하여 간호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병원은 간호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면서 오로지 병원근무에만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간호원 기숙사와 병원내 근무란 결혼하여 기숙사에서 퇴사할 때까지 어느 의미에서는 사회생활로부터 격리되는 생활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격리된 기숙사 생활을 3~4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때에 3할에 해당하는 간호원이 간호원으로서의 전문적 업적 역할을 청산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며, 그렇치 않은 경우 가정주부와 간호원을 겸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간호원의 나이 40대 전후가 되면 Career를 계획한 간호원의 경우에는 간호계의 지도자적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이때야 말로 비로소 간호사업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일이 그렇게 쉽게 용이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간호원이란 전문직업 수행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정이란 울타리에서의 책임 때문에 일반시민에게 간호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이디지를 “병원에서 의사의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들의 인식을 하루아침에 변경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사회인으로서 간호원의 책임이란 사회의 여러 조직 속에서 하나의 조직구성원으로써 역할 수행을 하면서 간호원인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나, 그래서 어떤 공헌을 사회에 할 수 있는가를 생활을 통해 사회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활동에, YWCA활동에, 지역사회와의 각종 부녀자(여성) 단체활동에 가입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의 영향력 있는 단체에 가입하여 그러한 단체가 우리 간호사업을 위하여 유리한 우호적인 입장에서 후원 및 협조를 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각종 여성단체의 활동에 활발한 회원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여성단체에서는 간호원은 간호원끼리 간호협회를 통하여 모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간호원이 새마을 지도자가 되고, 지역사회 대표자가 되고, 교회의 대표자가 됨으로써 간호사업을 위한 새로운 입법 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법 주제에서 간호사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간호의 리더쉽을 간호법 주제인 시민사회에서 발휘함으로써 간호를 시민대중에게 자연스럽게 인식시키고 사회의 각종 조직 속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되었을 때, 우리는 사회의 각종 제도와 규법을 정하는 법률 제정, 입법 절차에 있어서 간호사업 발전을 위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입법부의 국회의원으로 참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은 쉬우나 실질적으로 수행해 나가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제한점 및 위험성이 뒤따르게 되고,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친탁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논쟁의 쟁점은 이러한 제한점과 가능성에 대해 토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우리 간호원 개개인의 지역사회 내에서도 작은 참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럿의 간호원이 집약적으로 힘을 모아 협동적으로 노력할 때에 어찌한 난점이 있어도 타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간호의 법주제에서, 즉 사회의 보건이 아닌 타조직 속에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법을 도색하고 노력하는 것도 간호의 앞으로의 새로운 전망과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는 새로운 접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은 우리가 각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1. 간호원으로 결혼한 가정주부로서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직장에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마음은 있어도 일반시민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2. 일반시민 활동인 사회단체 활동에 대해서 종교와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

3. 경제적 여유가 문제된다.

4. 가정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外的)